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월 25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년 1월 7일

나. 제안자: 김동협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.2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김동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미혼모·부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가(안 제6조)

－ 미혼모·부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(안 제6조 제6호)

- 출산 미혼모의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설(안 제6조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: 2022년 본예산 기편성

다. 해당부서: 가족정책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2. 1. 7. ~ 1. 11.) 결과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허은옥)

가. 개정취지

- 미혼모·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미혼모·부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6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
 - 제6호 미혼모·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 - 제7호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저소득 한부모는 경제적 빈곤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으며, 특히 미혼모·부의 경우 사회적 편견 등으로 취업기회의 차별이나 집안 내의 관계 단절 등 보다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
- 또한 출산 전후의 미혼모는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으로 건강관리가 열악한 경우가 많아 추가적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임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고(법 제2조제2항),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(産前)·분만·산후(産後)관리, 질병의 예방·상담·치료, 영양·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법 제17조의6)
- 이에 우리구는 미혼모·부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양육비, 냉·난방비, 임신·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올해부터 운영 중임

<미혼모·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현황>

사업명	사업내용	소요예산(천원)
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	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(중위소득 60%이하)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	42,000
미혼모부 냉·난방비 지원	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(중위소득 60%이하) 중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에 동·하절기 각 2개월간 월25,000원 지급	3,000
미혼모 임신·출산의료비 지원	만20세 이상 미혼모 임신 1회당 산전 진료비 및 분만비, 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원	5,000

- 본 개정안은 미혼모·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출산 미혼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6(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(産前)·분만·산후(産後)관리, 질병의 예방·상담·치료, 영양·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